

의정부지방법원 2021. 11. 11 선고 2020나222215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]

전 문

원고, 항소인 A

피고, 피항소인 B

변 론 종 결 2021. 10. 21.

판 결 선 고 2021. 11. 11.

제1 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. 12. 3. 선고 2020가소321672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3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5. 20.부터 2020. 12. 3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(원고가 항소장에 기재한 항소취지에 따라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취지도 위와 같이 감축한 것으로 본다).

이 유

1.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의 요지

- 1) 원고는 2010년경 주식회사 C로부터 (차량번호 1 생략) 에쿠스 승용차(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)를 증여받았는데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등록명의만을 피고한테서 빌린 후 그 무렵부터 원고가 계속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.
- 2) 피고는 2016. 8. 28.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강취한 후 원고의 허락 없이 처분하였는데, 이 사건 차량의 그 무렵 시가가 적어도 30,000,000원 이상이다.
- 3)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무단으로 처분하여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,000,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.

나. 판단

- 1)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원고가 2010년경 주식회사 C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증여받고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등록명의만을 피고한테서 빌렸다거나 피고가 2016. 8. 28.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강취한 후 무단으로 처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다.
- 2)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, 나머지 점을 살피지 아니한 채, 받아들이지 않는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명한, 판사 최희동, 판사 안철범